

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제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

(제정) 2018. 2. 8.

(일부개정) 2019. 1. 30.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동 단위에 마련한 본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협의체는 “서울특별시광진구 중곡제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”(이하 “보장협의체”)라 한다

제3조(구성 및 기능)

- ① 보장협의체 구성은 위원장 및 총무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.
- ② 보장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1. 동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
 2.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해 자발적·실천적 의지가 있거나, 지역 내 인적·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, 법인, 단체, 시설의 실무자 또는 책임자
 3. 지역 내 취약계층과의 접근성이 높아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용이한 영업주 및 관련 직업을 가진 자
- ③ 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계·협력 업무를 한다.
 1. 동 관할지역 내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인적·물적 복지자원 발굴
 2.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을 위한 서비스 연계·지원
 3.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·운영
 4. 그 밖의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비밀준수) 위원은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

1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.
2. 민간위원장은 재직위원 과반 찬성 의견으로 1회 연임 가능하다.

제6조(임원) 본 보장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. <신설, 2019. 1. 30.>

1. 위원장: 2명(동장, 위촉직 민간위원 각 1명)
2. 수석부위원장, 부위원장, 총무, 감사: 각 1명

제7조(임원의 선출)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하고 결원이 있을시 보강한다. <신설, 2019. 1. 30.>

1.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동장과 위촉직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1명으로 한다.
2. 수석부위원장, 부위원장, 총무, 감사는 공동위원장이 추천하거나 위원 중 선출한다.

제8조(임원의 직무)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<신설, 2019. 1. 30.>

1. 위원장은 보장협의를 대표하고 보장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.
2.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총무는 보장협의체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 시 기록을 유지한다.
4. 감사는 보장협의체 운영과 예산의 집행을 감사한다.

제9조(회의 및 의사)

1.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2. 정기회의는 홀수 달과, 12월에 개최한다.
3.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1/3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4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회의록 작성) 보장협의체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
2. 회의 참석자 명단
3. 심의사항 및 결과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11조(의견의 청취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, 2019. 1. 30.>

부칙 <신설, 2019. 1. 30.>

제1조(시행일)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의에서 가결된 날부터 시행한다.